##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2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이연희·김정호·홍기원

이정문 • 이병진 • 정성호

허종식 • 박상혁 • 박홍배

한민수 이 한선 • 박 정

한준호 • 문진석 • 문금주

서미화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복지 등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름철 집중폭우에 따른 다세대주택 침수로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하고, 다세대주택 화재로 반지하층 거주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지하층 주택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처럼 주거약자층에 대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내에 공급되고 있는 '반지하층'에서 인명사고

를 포함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2신설).

법률 제 호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이주지원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주지원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6조의2(이주지원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
	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
	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이주지원 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주지원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생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②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의2.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
	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